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4694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피 고	○○광역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1. 피고가 202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가. 원고는 2014. 2. 6. ○○ ○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업태'를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목'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10. 1.부터 현재까지 'C'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17. ○○ ○구 D 대 119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13.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라는 상호[1]로 '업태'를 숙박업, '종목'을 관광호텔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 2. 20. 피고로부터 'E 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1. 9. 1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4,956.09㎡의 관광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1. 9. 3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원시취득)을 원인으로 취득금액 8,22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30,300,000원, 지방교육세 13,160,000원, 농어촌특별세 16,450,000원 합계 259,9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22.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이다."라는 이유로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230,300,000원)를 57,575,075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4. 20.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원고는 2021. 7. 22. 상호를 'F'로 변경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사. 원고는 2022. 6.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E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이하 '이 사건 호텔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한 것은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서 2020. 1. 13.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한 것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이 사건 호텔사업 개시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업종의 추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9. 8. 20. 법률 제16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창업'이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1호 본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우에는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C'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던 원고가 이 사건 호텔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설립된 중소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에 불과한지는 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 또는 법인과 신설 중소기업의 출자자 구성, 전자가 후자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정도, 양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 양자 사이의 거래 현황과 규모 및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호텔사업을 시작한 것은 '창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C'는 주된 업태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고, 주된 업종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부동산업, 분류코드: 68112 / 분류명: 비주거용 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물 임대업」에 해당되는 반면, 'E'는 업태가 '숙박업', 업종이 '관광호텔'이며, 실제 운영 형태 역시 관광호텔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숙박업, 분류코드: 55101 / 분류명: 호텔업」에 해당되어 'C'와 'E'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명백히 다른 업종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E 호텔'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E 호텔'은 'C'와는 서로 다른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 또한, 원고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21. 8.부터 2024. 3.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E'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소득자의 수가 2021년 및 2022년 하반기 기준으로 각 8명, 2023년 하반기 및 2024. 3. 기준으로 각 9명인 사실이 확인됨에 반하여, 원고는 'C'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은 없어서 'E'와 'C'는 그 인적 구성 또한 상이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를 기점으로 하여 기존에 영위하던 'C'와는 업종과 물적, 인적 구성이 전혀 다른 영업으로서 숙박업(호텔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호텔사업이 개시됨에 따라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재판장 판사 이○○

판사 전○○

판사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9. 8. 20. 법률 제16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끝.